

# 2022년도 「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」 사업 공고
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, 그늘막 등 『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(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)』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4월 11일

고용노동부 장관 ·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# 1. 사업개요

-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

## 2. 지원규모: 100억원

- ☞ 지역별 관할 일선기관은 [첨부1] 참고
- ☞ 일선기관별 지원규모는 「공단 홈페이지([www.kosha.or.kr](http://www.kosha.or.kr)) > 공단소개> 광역본부/지역본부/지사> 알림마당」 참고

## 3. 신청자격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(건설업 제외,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)

### ☐ 참여제한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
※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

### <참여 제한 사유>

- ▶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▶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·건축건설업체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(보조금 부담수급 등)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
- ▶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
- ▶ '22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 사업장

## 4. 지원내용

○ (지원품목) 이동식 에어컨, 그늘막(신품에 한함)

○ (지원한도)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(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%, 부가세 미지원)

※ 단,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(고위험개선 사업 포함)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차감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
☞ 지원내역 조회방법: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> 과거지원내역 확인

○ (지원기준)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설업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조업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동식<br>에어컨<br>  |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<br>공사현장 수의<br>200% 이내 지원  | 상시근로자수* 또는<br>산재보험 가입자수**<br>이상 지원 불가<br>※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<br>※ '20~'21년도 기지원<br>받은 대수 차감 지원 | 지원 설비의 적정 사용<br>등 확인을 위한<br>사후기술지도(1~3년)<br>실시 |
| 그<br>늘<br>막<br> | 현장과 작업거리,<br>근로자수 등을 고려한<br>적정수량 판단·지원 | 지원 불가<br>※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<br>건축법상 기설건물설치 허가<br>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(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)로 판단

가.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: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

나.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: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

\*\*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(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)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

○ (가격기준)

- (이동식 에어컨)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

| 규격   |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| 공단판단<br>표준가격*                | 최대지원한도<br>(표준가격×0.7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냉방능력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~3,000kcal/h<br>(3,489W) | 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 필요<br>(원가계산서 등)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3,000kcal/h<br>(3,489W)    | 4,000kcal/h<br>(4,652W)  | 1,138천 원                     | 796천 원               |
|      | 4,000kcal/h<br>(4,652W)    | 5,000kcal/h<br>(5,815W)  | 1,228천 원                     | 859천 원               |
|      | 5,000kcal/h<br>(5,815W)    | 6,000kcal/h<br>(6,978W)  | 1,488천 원                     | 1,041천 원             |
|      | 6,000kcal/h<br>(6,978W)    | 7,000kcal/h<br>(8,140W)  | 1,713천 원                     | 1,199천 원             |
|      | 7,000kcal/h<br>(8,140W)    | 8,000kcal/h<br>(9,304W)  | 2,012천 원                     | 1,408천 원             |
|      | 8,000kcal/h<br>(9,304W)    | 9,000kcal/h<br>(10,465W) | 2,052천 원                     | 1,436천 원             |
|      | 9,000kcal/h ~<br>(10,465W)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559천 원                     | 1,791천 원             |

\* 기지원 제품의 단가,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표준가격을 산출하였으며 제품의 소재, 성능, 옵션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정한 제품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- (그늘막) 그늘막 면적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

| 규격                    | 이상  | 미만  | 공단판단<br>표준가격* | 최대지원한도<br>(표준가격×0.7)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면적<br>(=그늘막<br>가로×세로) |     | ~5㎡ | 234천 원        | 163천 원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5㎡  | 10㎡ | 256천 원        | 179천 원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10㎡ | 15㎡ | 300천 원        | 210천 원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15㎡ | 20㎡ | 320천 원        | 224천 원               |

\* 측면 그늘막, 벨크로테이프, 염색 여부, 지지봉 종류에 따른 추가금액 등은 선택사항으로 지원불가

- (지원제품) 성능·사양\*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공급업체(제작·판매업체)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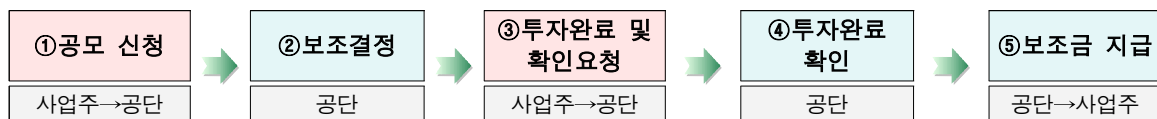
\* 냉방능력, 소비전력, 배수방법(배수펌프 내장여부, 응축수 물통(용량) 등), 열풍 배기방법 등

#### <제품 및 공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>

- ▶ 공급업체란 지원품목을 단순 제작·판매·공사하는 업체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.  
☞ 안전보건공단은 공급업체와 어떠한 연관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안전보건공단은 특정 공급업체 또는 제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하지 않으며, 사업장에서 사양 및 규격을 검토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.  
☞ 적합한 제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권한이며 의무입니다.
- ▶ 다만, 안전보건공단은 제품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에 공급업체에 대한 단순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.(등재된 공급업체는 공단에 기본정보 제공을 희망한 업체임)  
☞ 온라인 구매 등 홈페이지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(설비) 및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.
- ▶ 사업장-공급업체 간의 거래과정(견적, 계약, 물품검수, 구매대금 결제, A/S 기간·절차협의 등)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 및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 
☞ 사업장-공급업체 간의 거래과정과 결과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## 5.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

### [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추진절차 ]



### 가. 공모신청

- (신청기간) '22. 4. 18.(월) 09:00 ~ 5. 9.(월) 18:00
- (신청방법)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
  - ☞ 온라인 신청 매뉴얼: clean.kosha.or.kr > 알림마당 > 서식모임 및 자료실
  - ※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
  - ※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, 공급업체에서의 대리신청 확인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

○ (제출서류)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온라인<br>신청 시 | 오프라인<br>신청 시<br>(참고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②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③ 견적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④ 상품설명서(카탈로그) 등 - 제품명, 외관사진, 사양, 규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⑤ 지원대수,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<br>- (건설업 본사) 도급계약서 사본 (제조업 등) 작업장 내 이동식 에어컨 설치위치 사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<br>- <b>산재보험 가입 만50세 이상('22.5.10일 기준) 근로자 수 상부 좌측 표기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⑦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<br>(사업주 자필서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⑧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⑩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공단↔사업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⑪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점수부여 증빙서류<br>- ①노사문화우수기업 ②강소기업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<br>④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⑤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<br>⑥일자리 으뜸기업 ⑦일터혁신 우수기업(인증)<br>⑧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⑨산학협력 우수기업<br>⑩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<br>- KOSHA-MS 인증서, 위험성평가 인정서<br>* <b>신청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점수가 부여됨</b> | ○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⑫ 지역별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점수부여 증빙서류<br>- 지역별(일선기관별)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공단 홈페이지<br>(www.kosha.or.kr) > 공단소개> 광역본부/지역본부/지사> 알림마당 참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⑬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<br>(필요시)  | ○<br>(필요시)           |

※ ①,②,⑦,⑧,⑨,⑩ 서식은 「clean.kosha.or.kr > 알림마당 > 서식모임 및 자료실」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

※ ⑥은 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> 증명서발급」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
※ 가격결정 근거자료\*는 냉방능력 3,000kcal/h(3,489W) 미만의 이동식 에어컨에 한하여 제출

\* 원가계산서, 온라인 판매가격 등 시장가격 조사자료,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(5건) 등

## 나. 보조지원 결정

○ 신청기간 종료 후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의 우선지원 선정기준\*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 및 점수

☞ 일선기관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> 공단소개> 광역본부/지역본부/지사> 알림마당 참고

- 공단은 선정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또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 투자계획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함

- 지원결정 결과는 5월말(예정)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(clean.kosha.or.kr)를 통해 확인 가능

☞ 로그인 > 사업신청 내역 > 신청사업의 진행상태 확인 “결정통보“

## 다. 투자완료 및 확인요청

- (시설개선)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폭염 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
- (확인요청)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온라인<br>신청 시 | 오프라인<br>신청 시<br>(참고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❶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❷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❸-1 실거래 입증서류: 거래내역 증빙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오프라인 구매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온라인 구매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(제 품 구매) 계약서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매내역(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)<br>* 포함내용: 모델명,수량,금액,결제방법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❸-2 실거래 입증서류: 입금증빙서류*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❹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투자완료 확인 요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❺ 이행보증보험 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| ❻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

### <이행보증보험 증권>

- ▶ 계약기간은 “(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날짜~’22.12.31.)+사후관리기간(3년)으로 적용
  - (’22년 상반기 투자완료 확인사업장) 약정일(투자완료확인요청 전)~2025.12.31.까지
  - (’22년 하반기 투자완료 확인사업장) 약정일(투자완료확인요청 전)~2026.06.30.까지
- ▶ 피보험자는 안전보건공단(사업자등록번호 122-82-04898)로 함
- ▶ 이행보증보험 가입 문의처: 관할 지역 SGI서울보증보험

### <입금 증빙서류>

#### (오프라인 구매시)

- ① (무통장입금): 이체확인증\*+전자세금계산서+사업장 및 공급업체 통장사본 각 1부(원본대조필)
  - \* 이체 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

#### (온라인 구매시)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

- ① (무통장입금) 이체확인증 +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(국세청 홈텍스))
  - \* 이체 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
- ② (카드결제) 신용카드매출전표 + 신용카드복사본\*
  - (사용가능카드) 법인카드(법인)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(개인사업자)
  - (신용카드복사본)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
  - (신용카드매출전표) 공급자와 공급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

## 라. 투자완료 확인

- 공단은 현장확인을 통해 투자내용의 적정성\* 여부를 확인

\* 기제출한 투자계획서 상의 지원품목 사양, 납품 공급업체 일치 여부 등

## 마. 보조금 지급

- 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~2개월 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

☞ 보조금 지급일정은 「클린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> 공지사항 > 22년 클린사업 보조금 지급 일정 알림 참고

## 6. 기타사항

- 문의처: 대표번호(1544-3088)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
☞ 클린사업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>알림마당>지역별 문의처 참고
- 신청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,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보조지원 취소 및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음

### <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(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) 부정수급 금지 >

-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(또는 전부)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·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과 추가적인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.
  -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
  - 보조지원 결정 취소 시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조치 적용

## 첨부 1

##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구분

| 구 분          | 일선기관별    | 관할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울광역<br>본부   | 소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서울광역본부   | 서울특별시(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, 서초구, 강남구,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강원지역본부   | 강원도(춘천시, 원주시, 홍천군, 인제군, 화천군, 양구군, 횡성군), 경기도(가평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서울남부지사   | 서울특별시(영등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서울동부지사   | 서울특별시(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중랑구,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, 성북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산광역<br>본부   | 소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부산광역본부   |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울산지역본부   | 울산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경남지역본부   | 경상남도(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, 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, 하동군, 남해군, 통영시, 고성군, 거제시) |
|              | 경남동부지사   | 경상남도(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광주광역<br>본부   | 소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광주광역본부   |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(나주시, 화순군, 담양군, 곡성군, 구례군, 장성군, 영광군, 함평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전북지역본부   | 전라북도(전주시, 정읍시, 남원시, 원주군, 임실군, 순창군, 무주군, 진안군, 장수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전남지역본부   | 전라남도(목포시, 신안군, 영암군, 무안군, 강진군, 완도군, 해남군, 진도군, 장흥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제주지역본부   |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전북서부지사   | 전라북도(익산시, 김제시,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전남동부지사   | 전라남도(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, 보성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구광역<br>본부   | 소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대구광역본부   | 대구광역시(북구, 중구, 동구, 수성구) 경상북도(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, 군위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경북지역본부   | 경상북도(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, 영주시, 봉화군, 상주시, 문경시, 안동시, 의성군, 예천군, 영양군, 청송군)      |
|              | 대구서부지사   | 대구광역시(남구, 달서구, 서구, 달성군, 성주군, 칠곡군, 고령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경북동부지사   | 경상북도(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진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천광역<br>본부   | 소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인천광역본부   |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경기북부지사   | 경기도(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), 강원도(철원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고양파주지사   | 경기도(고양시, 파주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경기중부지사   | 경기도(부천시, 김포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전세종<br>광역본부 | 소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대전세종광역본부 |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(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금산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충북지역본부   | 충청북도(청주시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옥천군, 영동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충남지역본부   | 충청남도(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보령시, 서산시, 예산군, 홍성군, 서천군, 부여군, 청양군, 태안군)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충북북부지사   | 충청북도(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, 음성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기지역<br>본부   | 소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경기지역본부   | 경기도(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, 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경기서부지사   | 경기도(광명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안산시, 시흥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경기동부지사   | 경기도(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여주시, 양평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